|  |  |  |
| --- | --- | --- |
| **고용단위의 직업건강감호** **감독관리방법**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령 제49호《고용단위의 직업건강감호 감독관리방법》은 2012년 3월 6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 총국 국장 집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된바, 이에 공포하며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뤄린(骆琳)2012년 4월 27일**제1장 총 칙****제1조** 고용단위의 직업건강감호 업무를 규범화하고, 직업건강감호의 감독관리를 강화, 노동자 건강 및 유관 권익 보호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치료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고용단위에서 직업병 위해 접촉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이하 ‘노동자’로 통칭)의 직업건강감호 및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실시하는 감독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직업건강감호는 노동자가 재직 전, 재직 중, 이직 시의 응급 직업건강검사 및 직업건강감호 당안 관리를 가리킨다.**제4조** 고용단위는 노동자의 직업건강감호제도를 구축하여 완비하고, 법에 의거하여 직업건강감호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5조** 고용단위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해당 직업건강감호 업무에 대해 시행하는 감독조사를 받아야 하며 유관 문건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 고용단위의 본 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위법행위 신고 또는 보고할 권리가 있다. **제2장 고용단위의 직책****제7조** 고용단위는 직업건강감호 업무의 책임주체이며, 해당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 직업건강감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고용단위는 본 방법 및 《직업건강감호 기술규범》(GBZ188), 《방사업무인원의 직업건강감호 기술규범》(GBZ235)등 국가직업위생표준의 조건에 따라 본 단위의 직업건강검사 연간계획을 제정, 이행하고 이에 필요한 특별경비를 보장한다. **제8조** 고용단위는 노동자의가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하고 직업건강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노동자가 직업건강검사 받는 것은 정상 출근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9조** 고용단위는 성급 이상의 인민정보 위생행정부문이 비준한 의료위생기구를 선택하여 직업건강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직업건강검사를 받는 노동자 신분의 진실성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제10조** 고용단위는 직업건강검사기구에게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업건강검사 진행을 위탁할 때에 사실대로 아래 문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고용단위의 기본현황(2) 업무장소의 직업병 위해요소 유형 및 그 접촉인원 명단(3) 직업병 위해 요소에 대한 정기검측, 평가 결과**제11조** 고용단위는 아래 노동자에 대하여 재직 전의 직업건강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1) 해당 업무 부서로 이동한 근로자를 포함,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 예정인 신규 고용 노동자(2) 건강에 대한 특수한 조건이 있는 업무에 종사 예정인 노동자**제12조** 고용단위는 재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거치지 않은 노동자를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안배할 수 없으며, 직업금기가 있는 노동자를 해당 금기된 업무에 종사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고용단위는 미성년 노동자가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안배할 수 없으며, 임신기, 수유기의 여성노동자를 본인과 태아, 영아에 위해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안배할 수 없다. **제13조** 고용단위는 노동자가 접촉한 직업병 위해 요소에 근거하여 노동자가 재직 기간에 직업건강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배해야 한다. 재직기간에 받는 직업건강검사에 대하여 고용단위는 《직업건강감호 기술규범》(GBZ188) 등 국가직업위생표준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노동자의 검사항목과 검사주기를 확정해야 한다. 재검진이 필요할 경우 재검진요구에 따라 상응한 검사항목을 증가해야 한다.**제14조**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용단위는 즉시 유관 노동자가 응급 직업건강검사를 받도록 조직해야 한다. (1) 직업병 위해 요소에 접촉하는 노동자가 업무 과정에서 접촉한 직업병 위해 요소와 관련 있는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2) 노동자가 급성 직업 중독 위해를 입거나 직업 중독 증세가 나타난 경우**제15조** 종사하던 직업병 위해 업무 또는 부서 이동을 준비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단위는 이직 전 30일 내 노동자가 이직 시 직업건강검사를 받도록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가 이직 전 90일 내 재직기간에 시행한 직업건강검사는 이직 시 직업건강검사로 간주할 수 있다. 고용단위는 이직 시 직업건강검사를 미시행한 노동자에 대하여 체결한 노동계약서를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없다. **제16조** 고용단위는 신속히 직업건강검사결과 및 직업건강검사기구의 의견을 서면 방식으로 사실대로 노동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7조** 고용단위는 직업건강검사 보고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직업금기가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기존 업무 부서에서 전출 또는 임시 이전시킨다. (2) 건강손상이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적절한 위치에 안배한다. (3) 재검사가 필요한 노동자에 대하여 직업건강검사기구가 요구한 시간에 따라 재검사와 의료진찰을 안배한다. (4)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직업건강검사기구의 의견에 따라 의료진찰 또는 직업병 진단 진행하는 것을 안배한다. (5) 직업병 위해가 존재하는 부서에 대하여 노동조건을 즉시 개선하고 직업병 방호시설을 개선하여 노동자에게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직업병 위해 방호용품을 제공한다. **제18조** 직업건강감호 과정에서 신규 발생한 직업병(직업중독) 또는 2종류가 혼용된 직업병(직업중독)이 나타난 경우, 고용단위는 신속히 소재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고용단위는 노동자 개인을 위한 직업건강감호 당안을 구축하고 유관 규정에 따라 적절히 보존해야 한다. 직업건강감호 당안은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노동자의 성명, 성별, 연령, 출생지, 혼인, 학력, 기호(嗜好) 등 현황(2) 노동자의 업무경력, 과거병력 및 직업병 위해 접촉 경험(3) 현재까지의 직업건강검사결과 및 처리상황(4) 직업병 진료자료(5) 직업건강감호 당안에 보존해야 하는 기타 유관 자료**제20조** 안전생산 행정법 집행인원, 노동자 또는 가까운 친족, 노동자가 위탁한 대리인은 노동자의 직업건강감호 당안을 검열,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동자는 고용단위를 떠날 때에 직업건강감호 당안 사본 문건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고용단위는 사실대로 무상 제공해야 한다. 제공한 사본 문건에는 서명날인 해야 한다. **제21조** 고용단위에 분립, 합병, 해산,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에 대한 직업건강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국가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직업병 환자를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해당 직업건강감호 당안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 보관한다. **제3장 감독관리****제22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고용단위가 유관 직업건강감호의 법률, 법규, 규장 및 표준을 이행하는 현황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중점 감독검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건강감호제도 구축 현황(2) 직업건강감호계획 제정 및 특별경비 이행 현황(3) 사실대로 직업건강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현황 (4) 노동자가 재직 전, 재직기간, 이직 시, 응급 직업건강검사를 받은 현황(5) 직업건강검사 결과 및 소견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현황(6) 직업건강검사 보고에 맞는 조치를 취한 현황 (7) 직업병, 의심되는 직업병 보고 현황(8) 노동자의 직업건강감호 당안 구축 및 관리현황 (9) 고용단위를 떠나는 노동자에게 본인의 직업건강감호 당안 사본 문건을 사실대로 무상 제공한 현황 (10) 법에 의거하여 감독검사 해야 하는 기타 현황**제23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행정법 집행인원의 직업건강지식 훈련을 강화하여, 행정 법 집행인원의 업무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24조** 안전생산 행정법 집행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감독검사 직책 이행 시, 유효한 법 집행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안전생산 행정법 집행인원은 직책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법 집행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피검사단위의 기술기밀, 업무기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 유지해야 한다. **제25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감독검사 직책 이행 시, 피검사단위에서 피검사단위의 유관 직업건강감호 문건, 자료를 검열,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장 법률책임****제26조** 고용단위에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리고, 기한내 개정을 명령한다.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직업건강감호제도를 구축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2)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감호계획을 제정 및 특별경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허위날조,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직업건강검사 가담을 사주한 경우(4) 직업건강검사에 필요한 문건,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5) 직업건강검사현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6) 직업건강검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제27조** 고용단위가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한내 개정을 명령하고 경고 처분을 내린다.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검사를 미조직, 직업건강감호 당안 미구축 또는 검사결과를 노동자에게 사실대로 미보고한 경우(2)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고용단위를 떠날 때에 직업건강감호 당안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28조** 고용단위가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리고, 기한개정을 명령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개정하지 않은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업병 위해가 발생하는 업무 중지를 명령하거나 유관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폐업 명령할 것을 제청한다. (1) 규정에 따라 직업병 환자, 직업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진료 받도록 안배하지 않은 경우(2) 직업건강감호 당안 등 유관 자료를 은폐, 위조, 왜곡, 훼손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 **제29조** 고용단위가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한내 관리 명령을 내리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업병 위해가 발생하는 업무 중지를 명령하거나 유관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폐업 명령할 것을 제청한다. (1) 직업건강검사를 거치지 않은 노동자를 직업병 위해에 접촉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안배한 경우(2) 미성년노동자를 직업병 위해에 접촉되는 업무에 안배한 경우(3) 임신기, 모유기 여성노동자를 본인과 태아, 영아에 위해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안배한 경우(4) 직업금기가 있는 노동자를 해당 금기 업무에 종사하도록 안배한 경우**제30조** 고용단위가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직업병, 의심되는 직업병을 미보고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기한내 0개정을 명령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위 날조한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5장 부 칙****제31조** 탄광 안전감찰기구는 본 방법에 따라 탄광 노동자의 직업건강감호의 감찰업무를 책임진다. **제32조** 본 방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用人单位职业健康监护监督****管理办法**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令第49号《用人单位职业健康监护监督管理办法》已经2012年3月6日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局长办公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6月1日起施行。 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 骆琳 二○一二年四月二十七日**第一章 总 则****第一条** 为了规范用人单位职业健康监护工作，加强职业健康监护的监督管理，保护劳动者健康及其相关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制定本办法。**第二条** 用人单位从事接触职业病危害作业的劳动者（以下简称劳动者）的职业健康监护和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对其实施监督管理，适用本办法。**第三条** 本办法所称职业健康监护，是指劳动者上岗前、在岗期间、离岗时、应急的职业健康检查和职业健康监护档案管理。**第四条** 用人单位应当建立、健全劳动者职业健康监护制度，依法落实职业健康监护工作。**第五条** 用人单位应当接受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依法对其职业健康监护工作的监督检查，并提供有关文件和资料。**第六条** 对用人单位违反本办法的行为，任何单位和个人均有权向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举报或者报告。**第二章 用人单位的职责****第七条** 用人单位是职业健康监护工作的责任主体，其主要负责人对本单位职业健康监护工作全面负责。用人单位应当依照本办法以及《职业健康监护技术规范》（GBZ188）、《放射工作人员职业健康监护技术规范》（GBZ235）等国家职业卫生标准的要求，制定、落实本单位职业健康检查年度计划，并保证所需要的专项经费。**第八条** 用人单位应当组织劳动者进行职业健康检查，并承担职业健康检查费用。劳动者接受职业健康检查应当视同正常出勤。**第九条** 用人单位应当选择由省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批准的医疗卫生机构承担职业健康检查工作，并确保参加职业健康检查的劳动者身份的真实性。**第十条** 用人单位在委托职业健康检查机构对从事接触职业病危害作业的劳动者进行职业健康检查时，应当如实提供下列文件、资料：（一）用人单位的基本情况；（二）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种类及其接触人员名册；（三）职业病危害因素定期检测、评价结果。**第十一条** 用人单位应当对下列劳动者进行上岗前的职业健康检查：（一） 拟从事接触职业病危害作业的新录用劳动者，包括转岗到该作业岗位的劳动者；（二）拟从事有特殊健康要求作业的劳动者。**第十二条** 用人单位不得安排未经上岗前职业健康检查的劳动者从事接触职业病危害的作业，不得安排有职业禁忌的劳动者从事其所禁忌的作业。用人单位不得安排未成年工从事接触职业病危害的作业，不得安排孕期、哺乳期的女职工从事对本人和胎儿、婴儿有危害的作业。**第十三条** 用人单位应当根据劳动者所接触的职业病危害因素，定期安排劳动者进行在岗期间的职业健康检查。对在岗期间的职业健康检查，用人单位应当按照《职业健康监护技术规范》（GBZ188）等国家职业卫生标准的规定和要求，确定接触职业病危害的劳动者的检查项目和检查周期。需要复查的，应当根据复查要求增加相应的检查项目。**第十四条** 出现下列情况之一的，用人单位应当立即组织有关劳动者进行应急职业健康检查：（一）接触职业病危害因素的劳动者在作业过程中出现与所接触职业病危害因素相关的不适症状的；（二）劳动者受到急性职业中毒危害或者出现职业中毒症状的。**第十五条** 对准备脱离所从事的职业病危害作业或者岗位的劳动者，用人单位应当在劳动者离岗前30日内组织劳动者进行离岗时的职业健康检查。劳动者离岗前90日内的在岗期间的职业健康检查可以视为离岗时的职业健康检查。用人单位对未进行离岗时职业健康检查的劳动者，不得解除或者终止与其订立的劳动合同。**第十六条** 用人单位应当及时将职业健康检查结果及职业健康检查机构的建议以书面形式如实告知劳动者。**第十七条** 用人单位应当根据职业健康检查报告，采取下列措施：（一）对有职业禁忌的劳动者，调离或者暂时脱离原工作岗位；（二）对健康损害可能与所从事的职业相关的劳动者，进行妥善安置；（三）对需要复查的劳动者，按照职业健康检查机构要求的时间安排复查和医学观察；（四）对疑似职业病病人，按照职业健康检查机构的建议安排其进行医学观察或者职业病诊断；（五）对存在职业病危害的岗位，立即改善劳动条件，完善职业病防护设施，为劳动者配备符合国家标准的职业病危害防护用品。**第十八条** 职业健康监护中出现新发生职业病（职业中毒）或者两例以上疑似职业病（职业中毒）的，用人单位应当及时向所在地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报告。**第十九条** 用人单位应当为劳动者个人建立职业健康监护档案，并按照有关规定妥善保存。职业健康监护档案包括下列内容：（一）劳动者姓名、性别、年龄、籍贯、婚姻、文化程度、嗜好等情况；（二）劳动者职业史、既往病史和职业病危害接触史；（三）历次职业健康检查结果及处理情况；（四）职业病诊疗资料；（五）需要存入职业健康监护档案的其他有关资料。**第二十条** 安全生产行政执法人员、劳动者或者其近亲属、劳动者委托的代理人有权查阅、复印劳动者的职业健康监护档案。劳动者离开用人单位时，有权索取本人职业健康监护档案复印件，用人单位应当如实、无偿提供，并在所提供的复印件上签章。**第二十一条** 用人单位发生分立、合并、解散、破产等情形时，应当对劳动者进行职业健康检查，并依照国家有关规定妥善安置职业病病人；其职业健康监护档案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实施移交保管。**第三章 监督管理****第二十二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依法对用人单位落实有关职业健康监护的法律、法规、规章和标准的情况进行监督检查，重点监督检查下列内容： （一）职业健康监护制度建立情况；（二）职业健康监护计划制定和专项经费落实情况；（三）如实提供职业健康检查所需资料情况；（四）劳动者上岗前、在岗期间、离岗时、应急职业健康检查情况；（五）对职业健康检查结果及建议，向劳动者履行告知义务情况；（六）针对职业健康检查报告采取措施情况；（七）报告职业病、疑似职业病情况；（八）劳动者职业健康监护档案建立及管理情况；（九）为离开用人单位的劳动者如实、无偿提供本人职业健康监护档案复印件情况；（十）依法应当监督检查的其他情况。**第二十三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加强行政执法人员职业健康知识培训，提高行政执法人员的业务素质。**第二十四条** 安全生产行政执法人员依法履行监督检查职责时，应当出示有效的执法证件。安全生产行政执法人员应当忠于职守，秉公执法，严格遵守执法规范；涉及被检查单位技术秘密、业务秘密以及个人隐私的，应当为其保密。**第二十五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履行监督检查职责时，有权进入被检查单位，查阅、复制被检查单位有关职业健康监护的文件、资料。**第四章 法律责任****第二十六条** 用人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可以并处3万元以下的罚款：（一）未建立或者落实职业健康监护制度的；（二）未按照规定制定职业健康监护计划和落实专项经费的；（三）弄虚作假，指使他人冒名顶替参加职业健康检查的；（四）未如实提供职业健康检查所需要的文件、资料的；（五）未根据职业健康检查情况采取相应措施的；（六）不承担职业健康检查费用的。**第二十七条** 用人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一）未按照规定组织职业健康检查、建立职业健康监护档案或者未将检查结果如实告知劳动者的；（二）未按照规定在劳动者离开用人单位时提供职业健康监护档案复印件的。**第二十八条** 用人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产生职业病危害的作业，或者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责令关闭：（一）未按照规定安排职业病病人、疑似职业病病人进行诊治的；（二）隐瞒、伪造、篡改、损毁职业健康监护档案等相关资料，或者拒不提供职业病诊断、鉴定所需资料的。**第二十九条** 用人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限期治理，并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产生职业病危害的作业，或者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责令关闭： （一）安排未经职业健康检查的劳动者从事接触职业病危害的作业的；（二）安排未成年工从事接触职业病危害的作业的；（三）安排孕期、哺乳期女职工从事对本人和胎儿、婴儿有危害的作业的；（四）安排有职业禁忌的劳动者从事所禁忌的作业的。**第三十条** 用人单位违反本办法规定，未报告职业病、疑似职业病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1万元以下的罚款；弄虚作假的，并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第五章 附 则****第三十一条** 煤矿安全监察机构依照本办法负责煤矿劳动者职业健康监护的监察工作。**第三十二条** 本办法自2012年6月1日起施行。 |